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37

발의연월일: 2020. 7. 23.

발 의 자:김정호·정춘숙·강병원

허 영・김윤덕・김병욱

허종식 · 양경숙 · 서동용

전재수 · 윤후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·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과 민간소 유 건축물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 대한 맞춤형 전략개발 및 민간부문의 주택·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에너지효율과 성능 향상을 통한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조세감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7조의2(그린리모델링에 대한
	조세감면) 국가 및 지방자치단
	체는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
	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는
	「조세특례제한법」과 「지방
	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계
	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
	세를 감면할 수 있다.